

< 2024년도 방문 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>

1. 계약 기간

- ① 계약 기간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 기간까지로 한다.
- ② 서비스 시작일은 및 기간은 당사자의 협의 하에 정하며, 추후 변경 가능하다.

2. 계약 목적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가운데,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재가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,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①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 및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른다.
- ② 급여 이용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0~15%를 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.
- ③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100% 비용을 부담한다.

< 2024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>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6,630	150분 이상	48,250
60분 이상	24,120	180분 이상	54,320
90분 이상	32,510	210분 이상	60,530
120분 이상	41,380	240분 이상	66,770

<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 >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
<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>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% 9%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가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.
-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기관에서 수집·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
나.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예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- ③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, 재산상의 분실,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5. 계약의 해제

가.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,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해지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.

-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
- ② 방문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방문재가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

- 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
- ④ 기타 대상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나.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,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, 계약해지 의사를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
-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-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
- ③ 대상자가 건강진단 결과 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'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
- ④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⑤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- ⑥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재가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

< 2024년도 방문 목록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>

1. 계약 기간

- ① 계약 기간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 기간까지로 한다.
- ② 서비스 시작일은 및 기간은 당사자의 협의 하에 정하며, 추후 변경 가능하다.

2. 계약 목적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가운데,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목록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,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①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 및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른다.
- ② 급여 이용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0~15%를 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.
- ③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100% 비용을 부담한다.

<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>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	84,67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	76,34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7,670

-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,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한다.

<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 >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
<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>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% 9%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가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.
-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기관에서 수집·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
나.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- ③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, 재산상의 분실,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5. 계약의 해제

가.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,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해지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.

-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
- ②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
- ④ 기타 대상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나.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,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, 계약해지 의사를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
-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-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
- ③ 대상자가 건강진단 결과 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'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
- ④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⑤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- ⑥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재가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